송하원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4082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4.06.1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6.14

홈페이지 주소 : 준비중
이메일주소 :ryeowon.kim21@gmail.com

송하원 한방 삼계탕 정보공개서

농업회사법인 려원인터내셔널주식회사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 .

농업회사법인 려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청정로2234번길 24-18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비공개)*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31)832-885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준비중

목 차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창업희망자를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d>상호</td><td colspan="2">영업표지</td><td colspan="4">주 소</td></tr>
<tr><td rowspan="4">농업회사법인 려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td><td colspan="2">송하원 한방 삼계탕</td><td colspan="4">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청정로2234번길 24-18</td></tr>
<tr><td colspan="2">법인 설립등기일</td><td>사업자등록일</td><td>대표자</td><td>대표전화번호</td><td>대표팩스번호</td></tr>
<tr><td colspan="2">2016. 8. 2.</td><td>2016. 11. 1.</td><td>김려원</td><td>(비공개)</td><td>031)832-8855</td></tr>
<tr><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284311-0019191</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505-88-00371</td></tr>
</table>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table>
<tr><td>관계</td><td>이름/상호</td><td>영업표지</td><td colspan="3">주 소</td></tr>
<tr><td rowspan="3">대표이사</td><td rowspan="3">김려원</td><td rowspan="3">송하원 한방 삼계탕</td><td colspan="3">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청정로2234번길 24-18</td></tr>
<tr><td>대표자</td><td>대표전화번호</td><td>대표팩스번호</td></tr>
<tr><td>김려원</td><td>(비공개)</td><td>031-832-8855</td></tr>
<tr><td rowspan="3">사내이사</td><td rowspan="3">김나윤</td><td rowspan="3">송하원 한방 삼계탕</td><td colspan="3">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청정로2234번길 24-18</td></tr>
<tr><td>대표자</td><td>대표전화번호</td><td>대표팩스번호</td></tr>
<tr><td>김려원</td><td>(비공개)</td><td>031-832-8855</td></tr>
<tr><td rowspan="3">사내이사</td><td rowspan="3">김도현</td><td rowspan="3">송하원 한방 삼계탕</td><td colspan="3">경기도 연천군 군남면청정로2234번길 24-18</td></tr>
<tr><td>대표자</td><td>대표전화번호</td><td>대표팩스번호</td></tr>
<tr><td>김려원</td><td>(비공개)</td><td>031-832-8855</td></tr>
</table>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송하원 한방 삼계탕]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송하원 한방 삼계탕	물 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잎이 청청하여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건강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상 호	송하원 한방 삼계탕 OO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명(해당 지역명)
상표	송하원	출원번호: 제40-2016-0114492호 등록번호: 제40-1321717호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18,552	18,208	344	0	-7,272	-7,271
2022	24,094	16,478	7,616	0	-9,806	-9,806
2021	83,772	66,350	17,422	0	-23,211	-23,234

본 재무상황의 근거자료는 별첨 [2]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이외의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 1)의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이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1]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종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습니다(영업표지: 송하원 한방 삼계탕, 기간: 2016. 8. 12. ~ 2020. 12. 23.).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려원	대표이사	2016. 8. 2. ~ 2019. 8. 2.	농업회사법인 려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사내이사	회사 운영 및 관리
			2022. 10. 21. ~ 현재	농업회사법인 려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업 총괄
			2021. 1. 22. ~ 현재	송하원 한방 삼계탕 대표	사업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나윤	사내이사	2016. 8. 2. ~ 2019. 8. 2.	농업회사법인 려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업 총괄
			2022. 10. 21. ~ 현재	농업회사법인 려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사내이사	회사 운영 및 관리
			2011. 3. 25. ~ 현재	송하원 한방 삼계탕 대표	사업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도현	사내이사	2016. 8. 2. ~ 2019. 8. 2., 2022. 10. 21. ~ 현재	농업회사법인 려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사내이사	회사 운영 및 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0

당사는 2023년 기준 직원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송하원	출원일: 2016년 12월 16일 등록일: 2018년 1월 15일	출원번호: 제40-2016-0114492호 등록번호: 제40-1321717호	김려원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송하원 한방 삼계탕]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가맹점 오픈일): 가맹사업 예정

아직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2. [송하원 한방 삼계탕]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농업회사 법인 려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송하원 한방 삼계탕	김려원	가맹사업 예정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청정로2234번길 24-18

3. [송하원 한방 삼계탕] 업종

영업표지	업종	
송하원 한방 삼계탕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삼계탕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송하원 한방 삼계탕]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	-	-	-	-	-	-	-	-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송하원 한방 삼계탕] 가맹점 수

해당사항 없음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6. [송하원 한방 삼계탕]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송하원 한방 삼계탕]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2}당	상한	면적 3.3m^{2}당	하한	면적 3.3m^{2}당	
전체	-	-						
서울	-	해당없음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	해당없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	해당없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	해당없음						
경기	-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충북	-	해당없음						
충남	-	해당없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	해당없음						
경북	-	해당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당사 [송하원 한방 삼계탕]의 경우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8. [송하원 한방 삼계탕]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 [송하원 한방 삼계탕]의 경우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 기준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11. 가맹금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연천군지부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1 농협연천군지부	031-832-2083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시]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농협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농업회사법인려원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농협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농협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송하원 한방 삼계탕]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가입비	5,500	계약 체결 당일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권리를 부여받기 위한 대가(소멸성 비용)
최초교육비	7,700	계약 체결 당일	개점 전 조리/서비스 교육 등
현장교육비	3,300	계약 체결 당일	가맹점 현장교육
개점점검비 &인력점검비	3,300	계약 체결 당일	영업개시를 위한 점검, 영업지원 인력파견 등
합계	19,800	(부가세 포함)	

* 가맹금은 계약체결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③의 경우 당사의 영업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귀하는 당사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의 체결 경

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될 수 있습니다.

① 당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당사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2) 보증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3,000	계약 체결 시	계속가맹금 미지급,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등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원, 부가세 포함)
합계	22,800
가입비	5,500
최초교육비	7,700
현장교육비	3,300
개점점검비&인력지원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50평, 165㎡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금액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73,600**	**3,472**		
인테리어*	협력업체(미지정)	110,000	2,200	공사 착수 후 반환 불가	
간판 및 내부 인쇄물	협력업체(미지정)	12,000	240	제작, 입고 후 반환 불가	-
의자 등 가구	협력업체(미지정)	6,600	120		-
주방 / 홀 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미지정)	42,000	840		-
초도물품	협력업체(미지정)	3,000	60		-
포스기기	협력업체(미지정)	0	0		
별도금액	협력업체(미지정)	철거, 화장실, 냉난방기, 소방설비, 외장, 전기증설, 가스증설, 전화기, 컴퓨터, 테라스 등			매장상황 및 점주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위 표의 금액은 당사의 경험을 통하여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측 및 설계도면 제공비 5,000천원과 공사감리비 3.3㎡당 100천원**을 가맹본부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점포계약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특별한 기준 없음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송하원 한방 삼계탕]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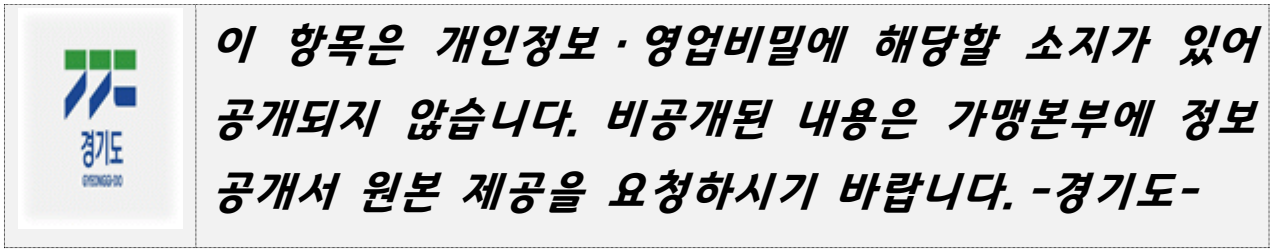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VAT 포함)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영업표지 사용료	가맹본부	매월 250	매월 10일	-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산출근거에 의한 비용 청구]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포스	포스업체	포스업체 별도 협의	포스업체와 별도 협의	시스템 관리비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12%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없음

당사가 2023년 기준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여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를 작성/보관/관리하여야 하고 당사는 정기납입경비 산정, 정보공개서 작성, 영업대책 수립, 가맹점 관리 감독 등을 위하여 귀하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방문, 서면, 이메일, FAX, POS, 발주 프로그램, 문자전송 등)할 수 있으며 귀하는 당사의 요청이 있을 시 성실히 보고해야 하고 해당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의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재고관리, 매출/회계처리 관련 등)를 제3자가 관리하는 경우 당사는 제3자에

게 직접 귀하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하는 제3자가 당사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금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당사는 귀하에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본 정보공개서 [Ⅰ－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에 따라 귀하에게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상표권자가 더 이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귀하는 변경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육비(11,000천원,VAT포함),계약이행보증금(3,000천원)합계 14,000천원을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금(5,500천원, VAT포함)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이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되거나 귀하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귀하는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다음 각 항의 조치를 취하고, 원상회복 및 정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철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가 부담합니다.]

① 귀하는 본 계약 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가맹점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고, 이와 동시에 당사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영업비밀, 노하우 및 설비 등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와 관련한 운영매뉴얼, 규정집, 전단지, 각종 시스템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송하원 한방 삼계탕]를 표시하는 모든 공작물, 건물 내외 장식, 간판 등 기타 상징물을 즉시 철거/삭제하여야 합니다.

③ 귀하는 [송하원 한방 삼계탕] 표시물의 일부만 철거/삭제하거나, 변형하여 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송하원 한방 삼계탕] 표시물을 완전히 철거/삭제하여야 하며, 온/오프라인에서 "구)송하원 한방 삼계탕" 또는 "전)송하원 한방 삼계탕"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도 아니됩니

다.

④ 귀하가 보유하는 운영매뉴얼 등 기타 본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로부터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당사에게 반환합니다.

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을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메뉴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매장을 가도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송하원 한방 삼계탕]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가맹점이 없어 공급한 품목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사의 [송하원 한방 삼계탕]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송하원 한방 삼계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2) 당사가 [송하원 한방 삼계탕]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3. 메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①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하는 메뉴를 판매/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구성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계약기간 중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경영환경의 변화 등 필요 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메뉴 제조에 따른 장비 및 집기 추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구입비용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메뉴를 변경 및 추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 1] 참고	[별첨 1]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메뉴 또는 원/부재료의 판매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메뉴 및 **별첨 [1]의 메뉴**를 귀하의 점포 외의 다른 곳(온라인 판매 포함)에 판매/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 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별첨 [1]메뉴명 및 판매가 참고**).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삼계탕판매를 주로 하는 업종	송하원 한방 삼계탕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귀하의 점포로부터 직선거리 0.8km(특수상권은 제외되어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또는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영업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영업지역 범위를 원형이 아닌 다각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영업지역은 0.8km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극장, 푸드코드, 시장, 지하상가, 역사 및 터미널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에 한해 [송하원 한방 삼계탕]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및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90일 사이 통보)→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계약기간 만료 전 60일 이내 동의여부 회신) → 영업지역 변경 완료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송하원 한방 삼계탕'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혹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본사의 권리가 미치기 힘든 부분이므로 이는 시장의 원리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당사에서는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귀

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귀하의 영업지역 내의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현재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원·부재료는 제외)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 소비자의 트렌드 변화,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필요로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에 공급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해당사항 없음			

* 2023년 기준 가맹점이 없으므로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①[송하원 한방 삼계탕]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갱신 거절 사유

계약 기간 종료 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제 40조)
1. 귀하가 본 계약상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당사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

①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로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Ⅴ-6-2)의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② 귀하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어집니다.

③ 당사는 귀하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당사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로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귀하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⑤ 다만, 귀하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당사 또는 귀하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당사 또는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당사 또는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3. 귀하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아래 표의 계약 해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계약 해지 사유(제 41조 제1항)

1. 가맹점사업자가 연체한 원·부재료 대금이 계약이행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4.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 . 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제 41조 제2항)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 면허 .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귀하는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경영지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 해지 사유(제 41조 제3항, 제4항,제5항)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약정한 원.부재료 등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등 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및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의 월평균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가맹본부의 장래의 기대이익 상실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3. 가맹본부가 압류,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 행정적 처분을 당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변경사유 발생 시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일에서 90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1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금 지급) →양수인 교육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Ⅴ-7-1)의 표의 개지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귀하는 계약의 존속 중에는 귀하가 제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가맹계약 존속 중	삼계탕을 주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송하원 한방 삼계탕]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9시 ~ 21시	주6일 이상 월 25일 이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3명 이상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필요 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uality(메뉴의 표준화)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Service(서비스)	고객접대, 종업원 교육 등
Cleanliness(청결)	주방위생, 매장청소현황 등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송하원 한방 삼계탕]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부담비율		분담 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가맹점	100%	-	-

<table>
<tr><td rowspan="4"></td><td colspan="2">모집광고</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전국 및 지역별 광고</td><td>브랜드 광고</td><td rowspan="3">가맹점 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50%
가맹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 30%</td><td rowspan="3">[송하원 한방 삼계탕]가맹점 수가 50개 미만인 경우 : 50%(전체 또는 지역 가맹점에 안분)
[송하원 한방 삼계탕]
가맹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 70%(전체 또는 지역 가맹점에 안분)</td><td rowspan="3">광고 또는 판촉행사 계획안 공고(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 동의(광고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판촉 :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및 광고 또는 판촉 참여 여부 결정 → 광고 또는 판촉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광고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판촉 :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동의 시 전체 가맹점 적용,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td></tr>
<tr><td>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 광고</td></tr>
<tr><td>판촉</td><td colspan="2">전국 및 지역별 판촉</td></tr>
<tr><td colspan="2">개별판촉</td><td>-</td><td>100%</td><td>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등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td></tr>
</table>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본인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광고(매스미디어 및 SNS 포함)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사전에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사항(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사용 이미지 등)을 당사에게 통지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당사는 10일 이내 귀하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기로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 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매뉴얼 및 문서의 내용 중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많은 시행착오를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유지됩니다.

통해 취득한 가맹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①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서 제15조에 따른 가맹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당사와 귀하 어느 일방은 그 상대방에게 다음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귀하가 제3자에게 제38조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양도한 경우나 당사가 가맹사업을 제3자에게 기존 조건을 그대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 귀하가 해지일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매출액 x 15% x 잔여개월 수

* 영업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월 평균 영업개월로 계산
* 귀하의 정상적인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월(月)은 제외하고 15일 이상 정상적으로 운영한 월(月)만 기준에 산입. 다만, 전체 영업일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 영업일의 당사 또는 당사의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상품 등의 매입대금 등을 일할 계산하여 월 평균 당사의 수익에 산정

③ 귀하가 제43조[비밀유지,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 [3,000만]원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귀하가 제31조[영업표준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 전체 통일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계약사항 위반으로써 귀하는 위약금 [2,000만]원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및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⑥ 본 조의 경우 당사 또는 귀하의 지급요청일에 각 상대방이 지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

지급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지급기견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이율(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⑦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손해배상 이외의 다른 계약 내용 위반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개점절차 및 비용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금액
합계	-	55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문의 접수 등	14일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시식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예치 안내	1일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쥴링 확인	2일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30일	
교육 실시	-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 중 실시)	5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 냉장고 등 입고 -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 소모품 등 입고 - 식자재 상품 등 입고	1일	
그랜드오픈	- 영업시작 -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 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 / 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서 혹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서 혹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서 혹은 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서 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

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필요 시 진행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 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 개선사항 발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 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용되는 비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송하원 한방 삼계탕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최초교육 및 현장교육 (개점 전)	각종메뉴 제조방법 및 관리방법	실습교육(지정 교육장)	30	11,000천원	필수 교육
보수교육	개선 내용	지정 교육장 또는 가맹점	내용에 따라 다름	산출근거에의한 비용청구	필수교육
수시교육	각종메뉴 제조방법 및 관리방법	지정 교육장 또는 가맹점	1	필요 시 협의 하에 진행	
특별교육	신매뉴 출시가 진행될 때	지정 교육장 또는 가맹점	2	필요 시 협의 하에 진행	

2.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① 귀하(교육내용에 따라 귀하의 관리자, 종업원이 포함될 수 있음)는 당사가 제공하는 개점 전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습득 정도가 낮거나, 교육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재교육과 함께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당사에 재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및 시즌/이벤트 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

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당사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신메뉴 교육 외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직영점 운영기간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직영점 매출액이 없습니다.

별첨 [1] : 메뉴명 및 판매가

연번	메뉴명	판매가(원)
1	한방삼계탕	17,000
2	들깨삼계탕	19,000
3	누룽지삼계탕	18,000
4	산삼삼계탕	20,000
5	옻삼계탕	22,000
6	전복삼계탕	23,000
7	특전복삼계탕	30,000
8	생능이삼계탕	30,000
9	삼계죽	16,000
10	전복죽	18,000
11	쟁반메밀국수	10,000
12	새싹메밀전	8,000
13	산해진미백숙탕	130,000
14	생능이백숙	72,000
15	옻백숙	72,000
16	누룽지백숙	70,000

※ 본부의 영업정책에 따라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음

별첨 [2]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 : 공급 원 . 부재료 등의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 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4]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합니다(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문서를 제공합니다).

연번	가맹점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5]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수령확인서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맹본부로부터 .

(제공받은 사실을 자필로 작성 예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 (인) 또는 서명

수령자 : (인) 또는 서명

별첨 [6] : 가맹금예치신청서

<table>
<tr><td colspan="3">가맹금예치신청서</td><td>처리기간
즉시</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상호(가맹점)명</td><td colspan="2"></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주소(사무소)</td><td colspan="2">(전화:)</td></tr>
<tr><td rowspan="3">가맹
본부</td><td>상호명(영업표지)</td><td colspan="2"></td></tr>
<tr><td>성명(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주소(사무소)</td><td colspan="2">(전화:)</td></tr>
<tr><td colspan="2">예치가맹금</td><td colspan="2">₩ (금 원 정)</td></tr>
<tr><td colspan="2">신청인의 계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가맹본부의 계좌</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td></tr>
</table>